

강원도립대학교 명예교수 규정

(제정) 2021-08-26 규정 제537호

(개정) 2021-11-08 규정 제58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, 명예교수규칙(교육부령 제1호) 및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제53조에 의한 강원도립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명예교수에 대한 자격 및 추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본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, 퇴직 당시 총장 또는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 교육·연구 분야의 업적이 매우 커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. <개정 2021.11.08.>

제3조(추대 절차) ① 명예교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과장이 소속학과 전임교원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의 퇴직 예정일 1개월 전에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 추천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과 전임교원이 없는 경우에는 교학처장이 추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1.08.>

② 총장은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해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로 추대한다. <개정 2021.11.08.>

제4조(구비서류) 명예교수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명예교수 임용 추대서 1부 [서식 1]
2. 명예교수 임용 지원서 1부 [서식 2]
3. 교육 및 연구 업적조서 [서식 3]
4. 본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조서 [서식 4]

제5조(추대 기간) 명예교수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<개정 2021.11.08.>

제6조(대우) ①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고, 본교 전임교원과 동등하게 각종 의식에서 예우를 받는다.

② 총장은 명예교수에게 주당 1교과목 이내의 강의와 해당분야 연구 등을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명예교수는 도서관 등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④ 총장은 강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명예교수 강의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(자격상실)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가 명예교수로서의 품위유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거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,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교수의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.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9. 12. 17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582호, 2021. 11. 08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추대절차에 관한 경과조치)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개정 전 퇴직한 총장 또는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추대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규정은 이 규정 개정 전 추대된 명예교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추대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